

7. 勤勞者住宅建設施行指針改正

資料提供：建設部 施行 1992. 1. 1

1. 주택규모 상향조정(기업이 직접 건설하는 경우)

현재 적용면적 15평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던 것을 기업이 자사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까지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함.

2.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향조정

근로자주택입주근로자의 자격중 월평균임금총액의 한도를 '91년도의 90만원(전년도 기준) 이하에서 '92년에는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하여는 월평균임금총액제한을 두지 않음.

이는 '91년도 임금상승 및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고, 장기근속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무주택장기근속근로자에게 주택마련의 길을 넓혀 주기 위한 것임.

3.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주택배정신청물량이 공급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인원비율로 배분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2배의 가중치를 두어 주택물량을 배정하던 것을 대기업에 비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근로자주택을 직접 건설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주택공급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3배의 가중치를 두어 배정토록 함.

- 예시) • 공급량 100세대
- 신청량 200세대(중소기업 100, 대기업 100)
 - 중소기업 $100 \times 3 = 300$
 - 대기업 $100 \times 1 = 100$
 - 배정량 100세대
 - 중소기업 $100 \times 3/5 = 75$ 세대
 - 대기업 $100 \times 1/4 = 25$ 세대

4. 입주대상준치

종전에 입주자격인정기업체인 연탄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91. 9. 9)에 따라 광업으로 분류되어 입주대상기업체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연탄제조업체근로자는 기득권을 인정, 입주대상으로 하기로 함.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개정

| 건 명 | 현 행 | 개 정 | 개 정 사유 |
|-----------------------------------|---|--|---|
| 1. 주택 규모 상향조정 | • 전용면적 15 평 이하 | • 전용면적 15평 이하(다 만, 기업이 직접 건설 하는 경우에는 18평 이 하) | - 특히, 지방의 경우 면 적협소로 미분양발생으 로 사업주체의 건설기 피 - 기업이 자사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주택건설사 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
| 2. 월평균임금 총액 상향조 정 | • '90년 월평균 임금 90만원 이하 | • '91년 월평균임금 100 만원 이하(다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임 금수준 제한 없음) | - 임금인상에 따른 상향 조정 및 10년 이상 장 기근속자 우대 |
| 3.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 한 가중치 확대 | • 2배 | • 3배 | - 중소기업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인력난 해소 - 대기업은 기업이 직접 건설공급토록 유도 |
| 4. 기타 • 입주대상 으로 계속 존치 | • 연탄제조업 은 제조업으 로 분류되지 않으나 근로 자주택입주 대상업체에 포함 | • 종전에 입주자격인정업 종은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개정여부에 관계 없이 인정 | - 기득권 인정 • '91. 9. 9 한국표준산 업 분류개정으로 연 탄제조업은 제조업에 서 광업으로 변경 |